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

제정 1983. 9. 1 규정 제 3호	2006. 3. 7 규정 제548호
개정 1987. 1. 1 규정 제 51호	2007. 4.11 규정 제580호
1994. 9.27 규정 제172호	2008. 2.18 규정 제606호
1997. 9.27 규정 제248호	2009. 3. 1 규정 제630호
2000. 4. 8 규정 제312호	2012. 4.10 규정 제694호
2000. 4.17 규정 제314호	2013. 4. 1 규정 제716호
2002.10.19 규정 제411호	2014. 4. 1 규정 제737호
2003.11. 7 규정 제441호	2017. 4.26 규정 제868호
2005. 1.26 규정 제493호	2017.11. 1 규정 제9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 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퇴직급여, 특별공로금,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7.9.27) (2000.4.17)(2002.10.19본조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균임금” 이라 함은 퇴직 또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1997.9.27, 2012.4.10)
2. “퇴직급여” 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공로금” 이라 함은 퇴직하는 임·직원으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와 순직 또는 업무상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997.9.27)
4. “명예퇴직수당” 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30조의 2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외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7.9.27)(2000.4.17)
5. “조기퇴직수당” 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30조의3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외에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 금액을 말한다.(2000.4.17)
6. (삭제) (2002.10.19 본호신설, 2015.3.31 삭제)

제4조(지급대상) ①퇴직급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 망
6.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7. 명예퇴직(2000.4.17)
8. 조기퇴직(2000.4.17)

②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997.9.27)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급여액의 산출은 평균임금에 별표 1 퇴직급여 지급률표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한다. (2012.4.10)

② 계약직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1.1>

③평균임금 산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1997.9.27)(2000.4.17, 2005.1.26)

1. 인사규정 제33조의 휴직기간(본호개정 2008.2.18)
2. 수습기간
3. 산전산후 휴가기간
4. (삭제 2008.2.18)
5. (삭제 2008.2.18)
6. 쟁의행위 기간
7. 공로연수기간 (본호개정 2015.3.31)
8. 공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9. (삭제 2008.2.18)
10. 교육파견기간(본호신설 2009.3.1)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월할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2002.10.19 본조개정)

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직원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7.9.27, 2008.2.18)

제7조(특별공로금) ①퇴직하는 임·직원이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순직 또는 업무상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단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퇴직급여액의 200%이내
 2. 순직,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자 : 퇴직급여액의 200%이내
- (1997.9.27)

②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7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 ①명예퇴직수당은 인사규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은 별표2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월로, 15일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1997.9.27)(2000.4.17)
(2006.3.7 개정)

제7조의3(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 ①조기퇴직수당은 인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하였을 때에 지급한다.(2000.4.17)

②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으로 한다.(2000.4.17)

제8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퇴직급여, 명예퇴직급여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1997.9.27)

제9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임원 및 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임원 및 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퇴직급여의 중간정산) ①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의 퇴직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013.4.1)

②2001년1월1일 이전 입사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자는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그 익일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다. (2002.10.19 본항개정)

③2001년 1월1일 이전 입사자로서 근무년수 5년미만자 및 기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은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다. (2002.10.19 본항신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02.10.19 본항신설)

제11조(퇴직수당) (조항 전부삭제 2014.4.1)

제12조(퇴직금 사용의 제한) 회계규정 제99조에 의하여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건설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퇴직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중 일부를 직원 자녀 대학학자금의 대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자금대여외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3.11.7 본조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7.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9.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9.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직원의 경우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4.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

①(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누적된 퇴직수당의 처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의 경우 퇴직수

당 지급을 계산시의 근속년수 만료일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적용하되, 중간정산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의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연단 위(월 이하 절사)로 산정한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만5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중도퇴사시에는 퇴사시)까지의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한시적 조정) 일반직 및 특정직직원의 경우 1955년생, 1956년생, 1957년생에 한하여 제7조의 2<별표 2>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산식을 “퇴직당시 월기본급 × 1/2 × 정년잔여월수”에서 “퇴직당시 월기본급 × 정년잔여월수”로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③(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3.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5조와 관련)

퇴 직 급 여 지 급 률 표

1. 임·직원 공통

구 분	지 급 율
전 임·직원	근속년수 × 평균임금 1개월분

<별표 2>(제7조의2와 관련)(2006.3.7 개정)

명 예 퇴 직 급 여 지 급 률 표

정년잔여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1년이상 5년이내	퇴직당시 월기본급 x 1/2 x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	퇴직당시 월기본급 x 1/2 x [60 + $\frac{(잔여월수 - 60)}{2}$]
10년초과	퇴직당시 월 기본급 x 1/2 x 90개월